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**대한병원협회**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고시개정 안내 (2014-121 ~ 124호, 선별급여 관련)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21~124호(2014. 7. 29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13호, 2014.7.22.),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96호, 2014.7.21.),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07호, 2014.6.30.) 및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86호, 2014.6.3.)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※붙임 : 고시 2014-121~124호 개정내역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 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대리 유소영 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409 (2014.07.30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sy@kha.or.kr